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기간

-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(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)

2) 계약목적

-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보호자)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

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월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%, 감경대상자는 9%, 6%, 기초수급자는 0% (각 지자체의 지원)
-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% 비용을 부담

< 등급별 월 한도 및 서비스 가능일 (2026년) >

등 급		1 등급 (240분)	2 등급 (240분)	3 등급 (180분)	4 등급 (180분)	5 등급 (180분)
월 한도액	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서비스 가능일		35일	33일	26일	24일	21일
서비스 금액		2,452,800	2,312,640	1,482,520	1,368,480	1,197,420
본 인 부 담 금	일반 (15%)	367,920	346,890	222,370	205,270	179,610
	경감 (9%)	220,750	208,130	133,420	123,160	107,760
	경감 (6%)	147,160	138,750	88,950	82,100	71,840
	기초수급자	100% 지자체부담 (개인무료)				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
- ② 기관에서 수집,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
-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
-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
-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
-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
-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
-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
-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

5) 계약의 해제

-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: 해약의 통지는 7일 전
-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: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